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6. 16 선고 2020가단7712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균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혜경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일

변 론 종 결 2021. 3. 17.

판 결 선 고 2021. 6.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9. 6.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이 법원 여천등기소 2019. 6. 12. 접수 제137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9. 7.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이 법원 여천 등기소 2019. 7. 29. 접수 제182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차8520호로 구상금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2016. 12. 12. 원고의 지급명령 신청을 인용하여, “C은 원고에게 87,703,239원 및 이중 19,897,675원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원제일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6. 12. 31. 확정되었다(이하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나. C의 소유권 취득

D는 1932. 12.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D는 1936. 12. 30.경 사망하였고, D의 상속인인 E는 1992. 9. 1. 사망하였다. 이에 E의 자녀로서 상속인들인 C(장남), F, G, G, H, I, J은 2019. 2. 22. 조부인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C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협의하고, 2019. 2. 26. 위 부동산에 관하여 C 앞으로 ‘1936. 12.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과 피고의 증여계약과 매매계약

C 2019. 6. 12. 장남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이하 ‘K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C 2019. 7.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이하 ‘L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C의 무자력

이 사건 증여계약과 매매계약 당시 C은 K 토지와 L 토지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호증, 을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이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처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만,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채택한 증거 및 갑 6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19. 7. 29.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275만 원을 받은 사실, C은 2019.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위 매매대금 275만 원과 자신의 돈을 합한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이 부당하게 염가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C은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시가에 상당한 대금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받은 매매대금을

원고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 사실을 모르고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 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

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갑 3, 4호증의 각 1, 을 2, 3,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C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던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D가 1936년경 K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D와 그의 상속인 E가 사망하였음에도 E의 상속인들인 C 등은 위 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수시장은 2018. 7. 3. 직권으로 D의 사망에 따른 K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D의 장손녀인 F(C의 누나)를 등재하고, F에게 이를 통지하는 한편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C은 2019. 2. 26. K 토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D의 손자인 C은 2018년 7월경 이후에야 비로소 K 토지가 상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 K 토지가 상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C을 포함한 E의 공동상속인들은, E의 장손(C의 장남)인 피고에게 위 토지를 귀속시키려는 목적으로, C 앞으로 ‘1936. 12.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어 C이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보인다. K 토지에 대한 2018년 재산세의 과세시가표준액은 360여만 원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위 토지는 사실상 재산가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C이 채권자를 해하려는 인식 아래서 K 토지를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C의 그러한 인식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K 토지 외에 다른 상속재산인 L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은 반복되었고, 피고의 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재현

부동산 목록

1. 여수시 K 답 225㎡
2. 여수시 L 임야 1,880㎡ 중 122/485 지분. 끝.